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업무내용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도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 착
학력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2022.03.30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40,858원	1.5억원	43좌 (40,456,894 원)	54좌 (50,806,332 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4.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